

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----|
| 의안 번호 | 관련 487 |
|----------|-----------|

제안연월일 : 2019년 4월 24일

제안자 : 교육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7조에 따른 기부채납은 서울시교육청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서울시교육청에 이전하여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, 사립학교는 기부채납의 수혜자가 될 수 없는바, 안 제3조제2호를 삭제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함.

2. 주요내용

- 안 제3조제2호 중 괄호를 삭제함(안 제3조제2호).

3. 참고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**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**

안 제3조제2호 중 괄호를 삭제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 수 정 안 |
|--|--|---|
| <p>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.</p> <p>1.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물 중 <u>신설·이설</u>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</p> <p>2. 교육감의 지도·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<u>신설·이설</u>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</p> <p>3. (생략)</p> | <p>제3조(적용범위) (생략)</p> <p>1. ----- ---- <u>신설(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7조에 따른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)</u>·이설 ----- -----.</p> <p>2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신설(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7조에 따른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)</u>·이설 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| <p>제3조(적용범위) (생략)</p> <p>1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|

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신설·이설”을 “신설(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7조에 따른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)·이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<p>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.</p> <p>1.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물 중 <u>신설·이설</u>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</p> <p>2. ~ 3. (생략)</p> | <p>제3조(적용범위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신설</u> (<u>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7조에 따른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</u>)·<u>이설</u> -----</p> <p>2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|